

건강 및 의료권

정의의 문제

건강권으로 할 것인가, 혹은 건강권 및 의료권으로 할 것인가

건강권은 의료권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의료권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권을 의사들의 진료의 권리인 "의권"과 동일시하여 건강권과 구별하기도 하는 정의도 있다(강신익, 국민의 권리와 의사의 권리, 생명윤리 제1권). 따라서 "건강권에 있어서의 차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명시(明示)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권리를 헌법소원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자는 직접 자신의 보건이나 의료문제가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醫療) 수혜자적(受惠者的) 지위에 있는 국민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1993년 11월 25일 92헌마87

국제장애인권리조약 뉴욕초안 문서에는 "건강과 재활에 관한 권리"의 장을 정하여 "각 국가들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건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강권 범위 설정

노동자건강권운동은 건강문제를 고용, 인권, 복지 등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어 총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시각에서, 노동자가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의 차별을 낳는 제반 사회적 조건을 철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도 이에 같은 사회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장차법안에 사회적 참여권을 목표로 하여 건강조건을 마련의 제반여건을 짚어가도록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다만, 고용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목적과 관련된 의료검진의 차별과 구별하여, 신체적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

권리

일본법

1) 의료와 재활에 관한 권리

(1)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심신의 상태를 자신의 의사로 양호하게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이룩하기 위해서 스스로 요구하는 의료 및 재활(이하 의료)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의료 등의 제공은 이를 거부하는 권리를 갖는다

2) 의료 등에 관한 차별금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취업에 관한 차별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금지한다.

- (1) 장애를 가진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개인으로서의 존엄을 상하게 하는 부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일, 또는 의료라는 이름 아래 강제로 격리적인 환경에 가두는 일
- (2) 정신의료에 있어서의 의료종사자 수 등 다른 과(科)와의 격차를 만드는 등 열악한 의료환경을 방지하는 일

차별유형

- 사고 및 재해 등으로 기존의 장애 외의 능력의 장애를 유발하는 장애 상태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차별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의료 책임자의 의무